비전임교원 초빙 공고

1. 초빙분야

- 초빙분야는 첨부 자료 및 비전임교원 초빙시스템(https://kutis1.kyungnam.ac.kr/ADFF/AM/AM4000M.aspx)에서 확인 가능

2.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

가. 지원자격

구분	자격기준
연구전담교수	•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•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'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• 소속기관의 초빙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원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- 세부 기준은 '첨부1. 비전임교원 초빙 분야' 참고

※ 교육 및 연구경력 등 환산율은 '[별표1], [별표2]'의 기준에 따름

나. 제출서류 [아래 순서대로 취합 → PDF 파일 하나로 통합 → 비전임교원 초빙시스템에 업로드]

① **임용지원서** **1부**
- 비전임교원 초빙시스템(https://kutis1.kyungnam.ac.kr/ADFF/AM/AM4000M.aspx)에서 입력·저장·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

② **학사・석사・박사 졸업증명서**(또는 학위수여증명서) 및 **성적증명서**(전과목 평점평균 기재함) **각 1부**
- 편입학 이력이 있는 경우, 전문학사를 포함한 모든 학위과정의 졸업(성적)증명서 제출
-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기 사본(학사,석사,박사) 및 모든 서류에 번역본(자필 서명) 첨부

③ 박사학위신고필증(한국연구재단 발행,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) **1부**
- 추가사항: 23.1.1.부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 발급이 폐지되었으므로 이후 신고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 내역을 캡쳐 후, 첨부하여도 무방함(https://dr.nrf.re.kr 참고)

④ **재직증명서** 및 **경력·자격·상벌증명서(해당자에 한함, 미제출시 불인정 및 삭제함)** **각 1부**
-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, 내역은 입력 하였으나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건은 불인정 및 삭제함
- '교육경력'의 경우 담당과목이 표기되지 않은 건은 불인정 및 삭제함

⑤ **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** **1부**
- 채용 공고의 첨부 자료 양식 출력 후 작성 및 서명

⑥ **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** **1부**
- 채용 공고의 첨부 자료 양식 출력 후 작성 및 서명

3.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

가. 접수기간: **2026. 11. 6.(금) 11:00 ~ 11. 11.(수) 11:00**

나. 제출방법: **본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.**

✓ **제출 전, 시스템 내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서류 입력 및 제출 요망.**

✓ 시스템 주소) https://kutis1.kyungnam.ac.kr/ADFF/AM/AM4000M.aspx

다. 주의: **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제출은 받지 않으**니, 반드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.

4. 심사절차 및 심사항목

가. 심사절차

1) 기초심사(1단계) : 접수기간 종료 이후

2) 면접심사(2단계) : 11월 중순 예정 ※기초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
3) 최종합격자 발표 : 11월 말 예정 ※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
※ 상기 일정은 본 대학교 또는 부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나. 심사항목

-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기본 지원자격의 적합성
- 전공에 대한 일치도 : 최종 학력 기준 전공에 대한 평가
-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전담교수의 기준에 대한 일치 및 적절성

5. 지원자 유의사항

가. **임용예정일 : 2026년 12월 1일** (단, 임용예정일은 사업 특성 등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음.)

나.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다.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.

라.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임용을 취소함.

- 임용지원서 허위 및 착오 기재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심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.
-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의 경우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, 증명서 미제출 경력 불인정함.
-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(본인이 기명·날인)을 첨부하여야 함.
- 서류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것은 접수하지 않음.

마. 심사결과는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므로 이메일 및 휴대폰은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, 각 단계별 탈락자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.

바. 임용 및 재임용 관련

- 본 연구전담교수는 산학협력단 사업수행기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함.
- 계속 지원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, 계약만료 시점에 재임용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되며,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임용계약에 따름.

사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함(관련 제규정은 홈페이지 참조).

6. 초빙 관련 문의

- 초빙분야 및 근로조건 관련

초빙분야	연 락 처
Registry&Repository 기술 개발	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지능화혁신사업단 055-249-2513

- 지원서 입력 및 제출 관련 : 경남대학교 교원인사팀(055-249-2283)

7. 별도 첨부 파일

- 첨부1. 비전임교원 초빙 분야
- 첨부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
- 첨부3.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2026년 11월

경남대학교 총장

(우)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(월영동) 경남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팀
(☎ 055-249-2283 / FAX : 055-222-5478)
E-mail : cfa0@kyungnam.ac.kr
홈페이지 : www.kyungnam.ac.kr

[별표1]

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표] <개정 2019. 6. 11.>

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(제2조, 제2조의2,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)

(단위: 년)

학력 / 연구·교육 경력연수 / 직명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	연구실적 연수	교육경력 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교수	3	4	7	4	6	10
조교수	2	2	4	3	4	7
강사	1	1	2	1	2	3
조교	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					

비고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[별표2]

교육 및 연구경력 등 환산율 산출기준(경남대학교 교원인사규정)

구분	관련법규 :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		대학 환산 인정률(%)	비 고
	경 력 내 용	환산기준(%)		
교육경력	**가.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**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	100	100	
	② 사관학교의 교관(부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)으로 근무한 경력	100	100	
	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100	100	
	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	30~70	60	
	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강사의 교육경력	30~70	50	단, 주당 5시간 이하 30%,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% 가산하되, 50%를 넘지 못함
	나.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·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	30~70	70	
	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30~70	70	
	④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	30~70	70	
	다.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 대학 (총)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② 공인된 체육단체(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)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	30~70	70	
연구경력	**가. 최종 학위취득자** 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	100	100	석·박사과정 재학연수(석·박사과정을 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음)
	② 석사학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	100	100	석사과정 재학연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

구분	관련법규 :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		대학 환산 인정률(%)	비 고
	경 력 내 용	환산기준(%)		
연구경력	**나.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**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. 단,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	30~70	70	박사과정 재학연수(석·박사과정 포함하되, 석·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음)
	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	30~70	70	석사과정 재학연수(단, 2년을 초과할 수 없음)
	다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(실험실습을 포함한다)를 대학·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	100	100	
	라.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	100	100	
산업체등근무경력	**가.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** ① 대학(전문대학 포함)전공분야를 국가기관(시설 및 군경력 포함)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30~70	70	
	② 대학(전문대학 포함)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③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	30~70	70	
	나.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대학(공업교육대학, 공업교육학과 포함)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·대기업체 등·중기업체	30~70	70	
	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④ 대학(전문대학 포함)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·대기업체 등·중기업체	30~70	70	

구분	관련법규 :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		대학 환산 인정률(%)	비 고
	경 력 내 용	환산기준(%)		
산업체등근무경력	**다.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** ① 판사·검사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②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·감정평가사·변리사 개업기간	30~70	70	
	라. 의사 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(한)의원 개업기간	30~70	70	
	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의사 근무	30~70	70	
	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,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간호사 근무경력	30~70	70	
	마.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	30~70	70	
	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	30~70	70	
	바.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	30~70	70	
	사. 예·체능 관련단체 주요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·체능 및 창작·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	30~70	70	